

# 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8,106,000	14,643,180
일반회계	476,916,849	14,307,505
특별회계	11,189,151	335,675
기타특별회계	11,189,151	335,675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159,040	64,771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155,000	4,650
상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5,610	2,268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13,342	12,40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033,664	31,01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45,823	136,375
드림빌특별회계	1,210,231	36,307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88,279	2,648
건축진흥특별회계	205,000	6,150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303,162	39,09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92,5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